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승인 취소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면철거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해당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정비·보전·관리 등의 주거환경개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함.(안 제40조 제4항 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구청장 등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청장·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 제1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제12조의3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 등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표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

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 등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등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 등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⑨ 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시장은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등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대상 적용례 및 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본다.

[별표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처리기한
				60일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명칭)			취소일자	
신청인 (추진위원 중 대표 선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금액	(백만원)		

구역 위치			
구역 면적		m^2	구역 지정일자
추진위원회 승인일자			토지등소유자 수
해산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해산 신청동의율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illegible]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청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표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

[별표 2]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외 주 용 역 비	감정평가수수료				종전 감정평가비 등
	정비사업 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
기 타 사 업 비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비용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
	계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
	기타사업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계				
회 의 비	주민총회				총회의 소요비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용
인 건 비	급 여	추진 위원장			추진위원장 급여
		상 근 위 원			추진위원회 임원 급여
		직 원			사무실 경리직원 등 급여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등
	계				

표준항목		세부항목	사용비용금액	비고	신청안내
운 영 비	통 신 비				소식지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여비교통비				재건축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등
	보 험 료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비 등 도서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판 공 비				업무상 판공비 등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전기료, 가스료 등
	수 선 비				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업체선정공고, 분양공고 등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공부발급 수수료, 운반비 등
	기타 비용				상기 이외의 운영비
	계				
합 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3(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u> <u>① 구청장 등은 추진위원회 사 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 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 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 성·운영할 수 있다.</u> <u>②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부구 청장·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 청장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u> <u>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으로</u> <u>한다.</u> <u>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 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 <u>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 하는 5급 이상 공무원</u> <u>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 한 검증을 위해 사용비용 보조</u>

현행	개정안
	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추진위원회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4(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제12조의3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 등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④ <u>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 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제1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1. <u>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표 제2호서식)와 증빙자료</u> 2. <u>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빙자료</u> 3. <u>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u> ⑤ <u>구청장 등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4항제1호 및 제2호)을 2 이상의</u>

현행	개정안
	<u>일간신문과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u> ⑥ <u>구청장 등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u> ⑦ <u>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4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 등은 보조금 신청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⑧ <u>구청장 등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u>

현행	개정안
제4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중 법 제82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9. (생략) <신 설>	<u>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 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통장계좌번호로 입금한다.</u> ⑨ <u>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시장은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등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 제4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9. (현행과 같음) <u>10.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u>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관 계 법 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1. 삭제 <2009.2.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③ 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 ④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조에서 "조합 설립인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2.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3.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 기간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법률 제11293호(20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및 제3항은 2014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고, 제4항은 2014년 8월 1일까지 유효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

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1, 2010.7.15>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결과
 2. 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 ②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의3(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2. 설계 용역비
 3.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7.31]

비용추계서 (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제12조의 3 제9항

- 구청장 등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시장은 「인천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등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제12의4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 ▷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등
-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

- 도시 및 주거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등
-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보조의 범위(법 제12조의 4 제3항)

-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

○ 정비사업 추진현황

■ 재개발 ■ 재건축 ■ 도시환경 ■ 주거환경

구분	기본 계획 수	추진위 미구성		추진 중인 사업							준공	
				추진위구성		정비구역지정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분계 인가		착 (시공) 공공
합계	145	4		11		37		39	46	1	5	2
중구	12	-	-	0		6	송월(아),신흥3 담동, 신흥1,신흥4 신흥삼익(아)	5	1	-	-	-
동구	17	1	송림삼익(아)	-	-	4	금창,셋골 대현학교뒤 만석동팽이부리마을	4	6	-	2	-
남구	36	2	도화역북측 학익장미(아)	2	학익3 연학초교북측	13	송의2,용현1,용현5, 용현6,주안8,도화9 남광로알(아) 용현8구역 송의6 용현2(추진위해제) 용현3,용현9,전도관2	6	11	1	1	-
연수	2	-	-	-	-	-	-		2	-	-	-
남동	12	1	간석한진(아)	-		2	연와마을 우신구역	3	4	-	1	1
부평	45	-		4	신촌 동수초교북측 부평북초교주변 산곡재원(아)	9	백운1,부개삼이 십정6 부평아울렛남측 동소정사거리북동측 삼산대보(아) 청천대진(아) 부평1 삼산부영(아)(조합해제)	13	17	-	1	1
계양	10	-		5	작전시장주변 작전우영(아) 대림연립 효성뉴서울(아) 효성새사미(아)	1	한우리(아)	-	4	-	-	-
서구	11	-		-		2	신현초교주변 롯데우암(아)	8	1	-	-	-

* 대현학교뒤와 만석동팽이부리마을은 정상 추진되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

○ 예산 소요 추정 (46개소 : 대상 전체가 추진위원회가 취소 될 경우 가정)

구분	추진위 구성 단계	정비구역지정 단계
총 소 요 예 산	25,424,000(천원)	
소 요 예 산	3,080,000(천원)	22,344,000(천원)
대 상(개소)	11	35
총 사용비용(개소)	500,000	1,140,000
평균 조례 적용 비용(개소)	400,000	912,000
평균 예산 소요(개소)	280,000	638,400

* 조례 적용 사용비용 : 총 사용비용의 80%

* 평균 예산 소요 : 평균 조례 적용 사용 비용의 70%

* 추진위 해제를 예측하기 어렵고 정확한 매몰비용 산정이 곤란하여, 현재 조합설립 인가 전 단계의 사업 구역 전체를 대상지로 하고 평균 소요비용으로 추정하였고, 실제소요예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나. 추계의 결과

- 총 예산소요 9,436,000천원(대상 46개소의 약 40% 가정)

[참고사항]

- 대상 46개소의 70%를 대상으로 할 경우
 - 약 18,200,000(천원)
- 대상 46개소의 50%를 대상으로 할 경우
 - 약 13,171,200(천원)
- 대상 46개소의 30%를 대상으로 할 경우
 - 약 8,142,4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정비기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이 도 형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계
세 입							
	소계						
세 출	사용비용 보 조	3,080,000	6,356,000				9,436,000
	소계	3,080,000	6,356,000				9,436,000
재원 조달							
국 비							
시 비	소 계	3,080,000	6,356,000				9,436,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3,080,000	6,356,000				9,436,000
군 · 구비							
민 간							
기 타							